

계약직원 임용 규정

제 정	:	2007. 7. 1.
개 정	:	2009. 11. 1.
개 정	:	2016. 8. 1.
개 정	:	2017. 11. 1.
개 정	:	2025. 7.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인사규정 제4조에 의거, 금강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계약직원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사유) 계약직원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시 임용할 수 있다.

1. 특정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새로운 업무 발생 및 업무량 증대에 따른 인원 보충이 시급할 때
3. 정규직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
4. 기타 총장이 계약직원의 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제3조(임용자격) 계약직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계약직원은 담당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면허증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2. 계약직원은 배치예정인 부서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약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및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선거범죄로 징역형 선고 및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 집행이 종료 혹은 면제된 후 10년 이내이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 확정 후 5년 이내인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파면·해임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된 자

제5조(임용절차) 계약직원의 임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직원의 임용절차는 본교 직원의 임용절차를 준용한다.
2. 계약직원의 임용은 임용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용된다.

제6조(임용기간) ① 계약직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최초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재임용 할 수 있다.

② 재임용 할 경우 계약 기간은 계약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학 운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한다. 급여는 1년 단위 연봉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전년도 근무 경력을 경력 사정 시 포함시켜 초임급호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제7조(임용계약) 임용계약은 별지서식 1호 ‘근로계약서’ 를 작성 및 날인함으로써 체결되며 본교와 계약직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재계약 여부 통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또는 해지 여부를 계약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계약직원의 계약 해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하지 않는 경우 임용계약은 해지된다.
2. 계약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계약을 해지한다.
 - 가. 징계처분으로 파면 또는 해임이 결정되었을 때
 - 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재정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 다.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담당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 할 때
3. 의원사직 시에는 최소 15일전에 사직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0조(복무) 계약직원의 복무는 본교 직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보수) 계약직에 지급하는 보수는 연봉급으로 하며 특정기술, 전문성,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며, 직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총장이 정한다.

제12조(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본교 직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임용) 삭제 <개정 2025. 7. 1.>

제14조(무기계약직 보수) 삭제 <개정 2025. 7. 1.>

제15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계약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계약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삭제 <개정 2025. 7. 1>